구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9호

2026년 구리시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구리시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구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 당 업 무	등 급	인 원
보건소장 (1명)	❑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개선사업 ❑ 감염병의 대응·관리·예방 ❑ 모자보건·치매예방관리 ❑ 노인보건사업 ❑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 4호)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1명

2. 채용(계약)기간 : 최초임용일로부터 2년

(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3. 응시자격 및 임용신분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거주지 제한 : 없음

나. 응시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중 아래 요건 1개 이상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table>
<tr><td rowspan="3"></td><td>자격증
기 준</td><td>○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td></tr>
<tr><td rowspan="2">경 력
기 준</td><td><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td></tr>
<tr><td><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td></tr>
<tr><td colspan="3"><관련분야 범위>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td></tr>
</table>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담당업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직위에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할 수 있음

다. 임용신분

1) 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의 요건을 갖춘 자

2) 임기제공무원 : 민간인의 경우에는 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약정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유지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1)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1)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

2) 시험위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을 검정

- (평가요소)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5. 근무조건 및 보수

▶ 경력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70,490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하한액의 130%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 2026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개방형 4호	-	70,490	-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11. 16.(월) ~ 11. 20.(금), 5일간

1) 접수처 : 구리시청 총무과 인사조직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점심시간 11:30 ~ 13:00 제외)

2)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 ※ **대리접수 가능**

나) 등기우편 접수

- 응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접수 마감일 소인 날인분에 한하여 인정

※ 주소 : (우편번호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총무과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발송할 응시자는 인사조직팀 사전 연락(☎031-550-2112)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 부착
- 봉투에 반드시 “구리시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응시표를 전송 받을 이메일 주소 기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추진

나. 서류전형 합격자 : 2026. 11. 26.(목) /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다. 면접시험 : 2026. 11~12월 중(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2월 중(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7. 제출서류 : 편철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여권용)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10,000원(구리시 수입증지 부착, 시청 1층 종합민원실판매)

※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사용불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각 1부

※ 이력서 등 소정양식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라.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의사면허 등)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발행기관 직인 포함)하고, 기관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확인용임)

사. 주민등록표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원본)

아.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차.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본인의견서) 1부.

※ 제출서류 반환 :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 7일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7일 이상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조직팀(☎031-550-2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